

# 서 울 특 별 시

우 100-744 서울 중구 대경로 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3 / 전송 733-9535~6

문서번호 시정 01226-~~629~~

시행일자 1992. 9.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<i>731-6153</i>
기획관리실장 전경		
시정개발담당관		시정연구관
제도개선계장	<i>208</i>	[1992년 9월 11일] 사인
기안	이 의 기	협조

제목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 운영계획

1.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'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계획을 볼임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.

붙임 : 1.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계획 1부

2.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모집 공고문(안) 1부. 끝.

(제2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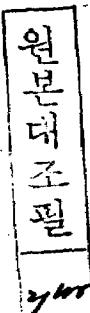
수신 홍보계획담당관

발신 시정개발담당관

제목 시보계제의뢰

1. '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모집계획을 시보를 통하여 공고코자 하오니 계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모집공고문 1부.



서 울 특 별 시 장

# 1993년도 시정발전 착상제도 운영계획

## 1. 목적 및 근거

### 가. 목적

- 일선 공무원의 유용한 현장경험 및 착상을 수렴 시정에 반영
- 직원 사기양양, 참여의식 고취 및 민주봉사행정 구현

### 나. 근거

-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(훈령 제652호)

## 2. 착상의 모집

### 가. 모집기간 : '92. 9. 1 ~ '93. 7. 31

### 나. 착상자의 자격 및 착상대상

- 착상자의 자격 : 서울특별시 산하의 모든공무원

### ○ 착상대상

- 시민복지와 생활편의증진
-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
-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
-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발전
- 기타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 등 시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### 다. 착상으로 볼 수 없는 것

- 일반적으로 공지 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
-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
-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.

- 법령개정 사항이거나 기타 착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

#### 라. 제출방법 및 접수

-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문서함, 우편이용 착장서 1부 제출

- 접 수

- . 착장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교부
- . 동일한 내용의 착상이 둘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착상이 우선함.

#### 3. 심사 및 채택

가. 심사시기 : '93. 11월중

나. 심사절차

-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
- 착상심사위원회(위원장 - 기획관리실장)에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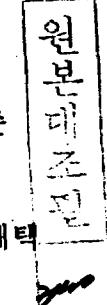
다. 심사기준

- 창의성, 경제성, 능률성, 실용성 및 적용범위 계속성을 기준으로 심사
-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노력도와 완성도를 참작하여 채택여부 결정

#### 4. 시상

- 채택자 전원 시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

금 상	은 상	동 상	장려상	노력상	창여상
250만 원이상	150만 원이상	50만 원이상	30만 원이상	10만 원이상	5만 원이상
500만 원미만	250만 원미만	150만 원미만	50만 원미만	30만 원미만	20만 원미만



## 5. 보상

- 착상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가능함

## 6. 착상 준비자에 대한 지원

- 산하 각급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관한 착상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,
-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.

## 7. 제안규정 적용

-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

## 8. 기타

- 1993년도 시정발전착상제도 운영지침은 따로 보내지 않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 참조 또는 서울특별시청 시정개발담당관실(731-6153, 6553)에 문의하기 바람.


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2-233 호

###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모집공고(안)

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1993년도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착상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2년 9월

서울특별시장

#### 1. 목적 및 근거

##### 가. 목적

- 일선 공무원의 유용한 현장경험 및 착상을 수렴 시정에 반영
- 직원 사기양양, 참여의식 고취 및 민주봉사행정 구현

##### 나. 근거

-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(훈령 제652호)

#### 2. 착상의 모집

##### 가. 모집기간 : '92. 9. 1 ~ '93. 7. 31

##### 나. 착상자의 자격 및 착상대상

- 착상자의 자격 : 서울특별시 산하의 모든공무원
- 착상대상
  - 시민복지와 생활편익증진
  -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
  -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
  -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발전
  - 기타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 등 시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다. 착상으로 볼 수 없는 것

- 일반적으로 공지 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
-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-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.
- 법령개정 사항이거나 기타 착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

라. 제출방법 및 접수

-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문서함, 우편이용 착상서 1부 제출
- 접 수

- . 착상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교부
- . 동일한 내용의 착상이 둘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착상이 우선함.

3. 심사 및 채택

가. 심사시기 : '93. 11월중

나. 심사절차

-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
- 착상심사위원회(위원장 - 기획관리실장)에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

다. 심사기준

- 창의성, 경제성, 능률성, 실용성 및 적용범위 계속성을 기준으로 심사

원본  
대조  
판

2000

- 실사결과 동점이 있을때에는 노력도와 완성도를 참작하여 채택 여부 결정

#### 4. 시 상

- 채택자 전원 시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

금 상	은 상	동 상	장 려 상	노 택 상	참 여 상
2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	150만원이상 250만원미만	50만원이상 150만원미만	30만원이상 50만원미만	10만원이상 30만원미만	5만원이상 20만원미만

#### 5. 보 상

- 착상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가능함

#### 6. 착상 준비자에 대한 지원

- 산하 각급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관한 착상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,
-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.

#### 7. 제안규정 적용

-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

#### 8. 기타

- 1993년도 시정발전착상제도 운영지침은 따로 보내지 않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 참조 또는 서울특별시청 시정개발담당관실(731-6153, 6553)에 문의하기 바람.